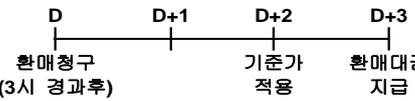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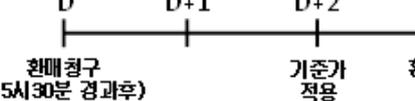
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나. 환매</p>	<p>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. 환매 기준시점 변경</p>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5시(오후 3시]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 영업일(D+3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 <p>(나) 15시(오후 3시]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 영업일(D+3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 <p>(4)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(오후3시)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. 다만, 15시(오후3시)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.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</p> <p>6)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(15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5시30분 (오후 3시30분)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 영업일(D+3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 <p>(나) 15시30분 (오후 3시30분)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 영업일(D+3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 <p>(4)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 (오후 3시30분)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. 다만, 15시30분 (오후 3시30분)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.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</p> <p>(6)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(15시 30분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